

## 구매카드 가맹점 특약

### 제 1조 (판매기업의 정의)

1. 판매기업(이하“ 판매기업” 이라 한다)은 구매기업이 동의하고 (주)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이 구매카드 가맹점 계약을 승낙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구매기업이란 판매기업과 구매거래가 있으며 동 구매거래에 대해 은행의 구매카드로 결제하기로 약정하여 은행에 판매기업을 추천한 기업을 말한다.

### 제 2조 (매출대금 청구 및 지급 제한)

1.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지급하여야 할 매출채권(상품/용역 또는 기타대금)으로 은행에 제출된 구매카드 매출채권내역에 한해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은행은 선지급액을 판매기업 계좌 앞 입금함으로써 매출대금 청구요청을 수락할 수 있으며, 이를 미수용할 경우 결제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기업의 지정 계좌 앞 입금토록 한다.
2. 구매기업이 결제대금을 연체할 경우 동 연체가 해소될 때까지 은행은 판매기업의 매출대금 선지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연체 이후 결제일이 도래하는 미지급대금의 지급도 거절할 수 있다.

### 제 3조 (매출대금의 청구절차)

1. 판매기업은 가맹점계약 체결시 매출대금의 입금 방식(즉시(할인)지급식 또는 만기(중도)지급식)을 선택하여 대금을 선지급받거나 구매기업이 정한 대금의 결제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용어의 정의는 가맹점 가입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란 참조)
2. 판매기업은 전자적 방식 또는 서면요청을 통해 제 1항의 매출대금 입금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항의 입금방법 중 만기(중도)지급식을 선택한 판매기업은 전자적 방식 또는 서면 등 본 특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결제일 전 대금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3.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에 지급하여야 할 매출내역을 전자적 방식 또는 서면 등 상호 인정하는 방식으로 은행에 제공한다.
4. 은행은 제 3항에 따라 제공된 판매기업별 매출내역에 따라 판매기업이 선택한 매출대금의 입금방식에서 정한 시기에 판매기업이 지정한 결제계좌로 대금을 지급한다. 만기(중도)지급식을 선택한 판매기업이 서면으로 선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의 영업점을 통하여 신청한다.
5. 만기(중도)지급식하의 선지급 요청은 구매기업의 대금결제일로부터 2 영업일전까지로 한다. 단, 구매기업의 구매카드 운용한도를 초과할 경우, 판매기업의 매출대금 선지급 요청은 제한될 수 있다.
6. 판매기업은 전자적 방식 또는 서면 등을 통해 은행에 선지급 요청할 수 있다.
7.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출내역을 은행에 취소 또는 변경요청하고 이를 은행이 수용할 경우, 판매기업은 이에 대하여 은행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구매기업의 취소 또는 변경요청 전에 은행이 판매기업의 선지급 처리한 경우, 이는 취소 / 변경처리되지 않는다.
8. 은행으로부터 선지급금을 수취한 경우, 판매기업은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가 법률적이고 실효적인 측면에서 은행에게 이전됨을 인정한다.
9. 구매기업과 은행간 구매카드 업무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가맹점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 이전에 판매기업에 지급되지 않은 모든 미지급대금은 구매기업이 결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제 4조 (판매기업 앞 수수료)

1. 은행은 판매기업의 결제일전 선지급 요청시 매출대금에서 선지급수수료를 차감한 대금을 판매기업의 지정계좌로 지급한다.
2. 은행은 선지급 요청이 없는 매출대금에 대해 결제일에 취급수수료를 차감하고 판매기업의 지정계좌로 지급한다.
3. 선지급수수료 및 취급수수료는 구매기업과 은행의 협의에 의해 정하며,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4. 3항에서 명시한 수수료의 변경시 은행은 판매기업 앞 별도의 통보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판매기업은 전자적 방식을 통해 매출내역별 수수료를 조회할 수 있다.

### 제 5조 (전자적 방식의 전산시스템 이용)

1. 판매기업은 구매기업과 은행간 약정에 의해 규정된 업무에 대해 전자적 방식(기업인터넷뱅킹등)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2. 판매기업은 전자적 시스템 이용에 대한 관계법령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은행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제 6조 (가맹점 계약의 해지)

1. 판매기업은 지정결제계좌, 대표자, 주소 등 정보변경사항 발생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은행은 제1항의 통지내용에 대해 영업시간 중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일에 정보 변경하며, 영업시간 이후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접수일 익영업일까지 판매기업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3. 은행은 구매기업의 요청시 판매기업의 거래정지, 해지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다.
4. 은행과 구매기업간의 구매카드 업무 계약이 해지시 가맹점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5. 구매카드에 의한 거래가 법률 또는 감독기관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에도 제 4항과 같다.

### 제 7조 (기타사항)

1. 구매기업과 은행이 체결한 구매카드 업무 계약이 변경될 경우, 구매기업은 그 변경내용을 판매기업에게 통지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시키기로 하며 판매기업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2. 본 특약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은행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